

# 2021년도 제2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0. 18.(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5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05건(안건번호 제2021-141984호~14296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41984호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41985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일부를 불법 복제하여 전송 중인 사안으로, 영리적·계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 중인 점, 공정이용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41986호~141999호 및 제2021-142958호~142963호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바 시정권고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8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725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14843호~1556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의 총 725개 URL 정보에 관하여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8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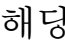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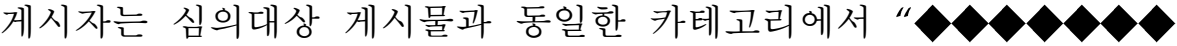

#### 2. 전차(제2021-25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저작물명 등 민원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 A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B 위원: 토렌트 파일의 전송은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방조 행위임이 인정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게시물로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D 위원, E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984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1985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권리자의 계열사 OTT 서비스인 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 가능함. 전체 분량은 110분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전반부 16분가량을 제공 중임.  
게시자는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  
”라는 제목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 영상 제공 일자와 이웃신청을 통한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

음.

게시자는 블로그를 통하여 위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공개하기 전에 홍보 및 이웃신청 유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전반부 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심의대상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다수의 광고 링크가 확인되는바, 게시자는 접속 유도를 통한 광고 수익을 누리고 있을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4198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의 영화 게시물을 제시하면서)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확인해보겠음. ‘◇◇◇◇◇’ 시리즈뿐만 아니라 “◆◆◆◆◆◆◆◆◆◆◆”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영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인 사실이 확인됨.
  
- E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 전반을 검토한 결과 불법복제물 이용을 통한 광고 수익 창출이 목적인 것으로 보임. 불법복제물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임. 순수 취미 활동이라거나 매니아층의 활동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음.
  
- C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기타 불법복제물의 경우 심





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패스파인더: 래스 오브 더 라이처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2007호는 2,070포인트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무설치 버전을 판매되고 있음. 해당 게임은 2021. 9. 2. 발매된 최신 게임으로 55,890원에 합법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

(영화 '올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2505호는 178포인트에 영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2021. 8. 18. 개봉한 최신 영화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의 인기 영화임.

(방송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2818호는 해당 방송의 2021. 8. 7. 방영분을 92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긴급 대응 저작물 영화 '○○○○'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2958호~142963호는 ○○○○. ○○. ○○. 개봉한 국내 영화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41986호~14296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986호~14296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984호~14296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843호~15567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 4. 폐회 선언

-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2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8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25.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